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24.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4. 검 토 의 견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9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예 순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를 조정함
(안 별표 1).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7. 5. 17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자치입법안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